

## 특허 사용협약서

- 특허 명 : 슬릿플레이트를 구비한 건축구조용 댐퍼
- 특허 번호 : 특허 제10-0517893호
- 발 주 자 :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25)
- 특허 권 자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 유 성
- 통 상 실 시 권 자 : (주)DRB동일 대표 오명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동로 55번길 28)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기관으로서 “특허권자”는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특허공법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위 공사에 대한 특허사용실시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 (사용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특허 부분만의 기술사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특허권자”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기술사용료 등)

-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특허권자”는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한 요율(0%)을 공사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② “특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특허권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한다.

-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 (하도급 등)

- ① 제3조에 따른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 ③ "특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다른 신기술·특허공법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9년 7월

"발주자"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인)

"특허권자"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 유 성

"통상실시권자"

(주)DRB동일 대표 오명환 (인)